

공동기술개발 공모전 약관 동의서

- 갑 : 공모전 참여 회사
- 을 : 삼성물산주식회사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각각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개발비용 지원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 심사·발전 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이하 '초기 아이디어'라 함)를 개선·발전시킨 아이디어(이하 '최종 아이디어'라 함)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 개선·발전의 수행] ① 갑은 을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약관에 따른 초기 아이디어의 개선·발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디어의 귀속] ①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개량적 효과가 없어 실질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③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시킨 최종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개량적 효과를 가져 초기 아이디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최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며, 이때 갑과 을의 각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 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을이 지급한 개발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후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저야 하고, 을이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고 을을 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책하여야 한다.

제6조 [쌍방의 의무] ① 을은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갑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공지해야 한다.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

② 갑과 을은 아이디어에 관한 권리가 갑과 을의 공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타방을 누락하고 그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개발·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7조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 갑은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제

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료의 폐기는, 을이 자료 폐기 후 갑이 과제 제출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폐기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을이 폐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갑이 수상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갖고 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비용을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을은 공모전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1조 [사용권 허락] 갑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지며 을이 그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양도] 을은 갑이 단독 보유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또는 갑의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